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3. 12. 23(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회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 제1호에 의거, 제 2010-1차 회의(2010.1.14), 제2011-17차 회의(2011.3.21) 및 제2011-67차 회의 (2011.11.30)에서 의결한 '고시 및 위원회 규칙 중 단순 자구 수정, 서식 변경, 일몰 기한 연장 등 경미한 사항 개정', '상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하향 입법하거나, 신청 절차·서식 등 단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및 '방송심의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명령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엠비엔미디어, (주)홈드라마 - (2013-45(서)-166 ~ 167)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 방법을 위반한 (주)엠비엔미디어와 (주)홈드라마에 대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법인명(채널명)	제재조치 (처분일)	처분명령 내용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엠비엔미디어 (Mmoney-‘골목대장’)	경고 (‘13.9.13.)	‘경고’ 및 경고 받은 사실을 7일 이내에 본방송 직전 1회 고지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고지방송 32일 지연)	과태료 250만원
(주)홈드라마 (HOME DRAMA -‘리얼토크 여우야담’)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13.9.13.)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동 제재조치 받은 사실을 7일 이내에 본 방송 직전 1회 고지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 (고지방송 3일 지연)	과태료 250만원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3-45(서)-168)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위원회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16. 12. 31일)으로 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12. 2. 17일)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수정

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2013-45(서)-169)

-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의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를 → “방송 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로
 - 재검토 조치기한의 “2014년 11월 30일”을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로 개정함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2013-45(서)-170)

-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방송평가위원회 재정비) 방송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결격사유(평가 대상사 임직원, 사외이사 등)를 구체화하고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 대체 근거 신설

- 평가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교체시기를 8월에서 4월로 변경

(‘시청자 사과’ 감점 배점 삭제) ‘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감점하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중 하나인 ‘시청자 사과’가 현재의 위헌 판결(‘12.8.23)을 받음에 따라 ‘시청자 사과’ 감점(4점)을 삭제하고, 동 제재조치 병과 시 감점처리 방식(6점)을 ‘경고’ 병과 시 감점처리방식(5점~6점)으로 변경

(어린이 방송편성 평가 실질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의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22시~07시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척도 조정)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11.12.26)’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법령 준수여부 평가 배점 조정)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확대(30→40점)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평가 배점을 축소(20→10점)

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13-45(서)-171)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7.2.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